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0년 9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가.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이 지난 '92.4.17(충청북도 고시 제92-62호) 고시되었으나 그동안 소방관서의 신설, 도로개설등으로 소방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나. 지방세에 대한 부담분익과 응익과세의 원칙을 준수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세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과지역을 변경고시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소방혜택 가능지역 확대에 따른 부과지역 추가지정

구 분	행정구역	현행부과 지역		금회추가 지역		변경후부과 지역		제외 지역
			%		%		%	
법정리동	1,519	515	33.9	855	56.3	1,370	90.2	149
행정통리	4,601	2,897	63.0	1,530	33.2	4,427	96.2	174
반	18,497	13,801	74.6	4,401	23.8	18,202	98.4	295

※ 시군별 부과지역, 제외지역은 붙임 “공동시설세부과지역 변경안” 참조

5. 검토의견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을 검토한 바

이는 '92년도 이후 도로여건 개선, 소방관서 신설등으로 소방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이나

이번에 도 전체 18,497개반의 23.8%에 해당하는 4,401개반이 추가지정되는 것으로

- '92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추가지정을 하지 않은 사유와
- 추가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방법
- 그리고 부과지역 변경으로 인한 세수증대, 즉 도민부담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991	1,270	283	229	1,279	1,279	공익용	
1992	1,437	325	1,230	3,905	4,601	공익용	
합계	2,707	608	4,401	5,184	13,801	공익용	